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32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김승수 · 우재준 · 김소희

박충권 · 임이자 · 김예지

한기호 • 박성민 • 서지영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지정 대상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용 수면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내외로 제한되어, 공공용 수면은 공공용이 아닌 수면과 비교하여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이 그 절반이므로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낚시가 대표적인 레저활동으로 성장하여 낚시 인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낚시 인구의 증가는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 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낚시인과 인근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이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 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낚시와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나.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낚시인의 안

전 확보 등 긴급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낚시 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초 허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 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 마.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 영업에 따른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변경·지정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 의2 신설).
- 사.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수산동물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 확보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긴급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통 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낚시인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낚시제한기준"을 "낚시제한기준(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2회까지 그 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을 넘지 못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어획실적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획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낚시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 2.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소
 - 3. 영업일시 및 장소
 - 4. 어종별 어획량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획실적의 신고 시기·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여가특별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신청의 방법·절차 및 지정의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44조의3(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특별구역 내의 낚시 도구·시기·대상 및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생 략)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u>1</u>
	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
	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
	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u>4</u>
항 및 <u>제2항</u> 에 따라 낚시통제	<u>제3항</u>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	
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	
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 확보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긴급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낚시인 안전사고 발생 현황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u><신 설></u>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 3. 제5조에 따른 <u>낚시제한기준</u> 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 는 행위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생략)

<u> 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
1. • 2. (현행과 같음)
3 <u>낚시제한기준</u>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낚
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게19고(원기이 약중기가) ① (첨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현
행과 같음)
②

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④ (생 략) <u><신 설></u>

<신 설>

<u>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라 허</u> <u>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30년</u> 을 넘지 못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어획실적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획실적 신고 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낚시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 호
- 2.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 소
- 3. 영업일시 및 장소
- 4. 어종별 어획량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어획실적의 신고 시기·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 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 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낚시여가특별 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둘 이상 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u>는 각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u> <u>하여야 한다.</u>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 특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여가특별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거나 해제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신청의 방법·절차 및 지정의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

<신 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2. (생략)
- 23. <u>제47조제4항</u>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4. • 25. (생략)

②・③ (생 략)

	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	고
	낚시여가특별구역 내의 낚	시
	도구・시기・대상 및 수산동	물
	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	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낚
	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원을 할 수 있다.	
1	<u></u> 55조(과태료) ①	
	·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47조제6항	
	20. <u>- </u>	
	24.·2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